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51
----------	-------

발의연월일 : 2026. 1. 30.

발 의 자 : 복기왕·전용기·윤종균
정태호·박용갑·김승원
김우영·이상식·박홍배
김한규·위성곤·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사막(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료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2만 7,609곳으로 약 73.5%에 이르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과 농촌 공동체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과 제도는 그동안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식품사막 확대로 식품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 관련 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촌지역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역먹거리계획과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정책 수립·시행 시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3조의2, 제23조의6 및 제54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24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에 제8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4. “식품접근성”이란 취약계층이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안전하고 신선하며 균형잡힌 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정책적·사회적 조건을 말한다.

제2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 판매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식품 판매업체의 이동판매·배송서비스 지원
3. 고령 농업인과 지역주민에 대한 식생활 돌봄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그 밖에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의6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

4의2. 식품접근성 제고 지원

제54조 중 “영세 농업인”을 “식품접근성 제고, 영세 농업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24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의3. (생 략) <u><신 설></u> 9. (생 략)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생 략) <u><신 설></u>	법률 제2124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정의) ----- -----. 1. ~ 8의3. (현행과 같음) <u>8의4. “식품접근성”이란 취약계층이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안전하고 신선하며 균형잡힌 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정책적·사회적 조건을 말한다.</u> 9.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1. 식품 판매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u> <u>2. 식품 판매업체의 이동판매·배송서비스 지원</u>

제23조의6(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7. ~ 9. (생략)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④ ~ ⑥ (생략)

3. 고령 농업인과 지역주민에 대한 식생활 돌봄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그 밖에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의6(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

7.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식품접근성 제고 지원

5.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 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u>영세</u> <u>농업인</u>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 ----- ----- <u>식품</u> <u>접근성 제고, 영세 농업인</u> ----- ----- ----- ----- -----.
---	--